

제403회 국회(임시회)

정무위원회

---

# 국민권익위원회

## 주요 업무 현황

---

2023. 2. 20.



국민권익위원회

# 목 차

I. 기관 일반 현황	1
II.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	4
1. 업무 추진 방향	4
2. 주요업무 추진계획	5
① 현장중심의 민생고충·사회갈등 적극 해결	5
②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·제도 개선	6
③ 부패·불공정 관행 개선 및 사회전반의 청렴수준 제고	8
④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	10
⑤ 행정심판 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	11

# I. 기관 일반 현황

◇ 「국민권익위원회」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, 국가청렴위원회,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출범('08.2.29.)

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

## ① 주요 기능

### 부패 방지

#### 반부패·청렴

- 반부패·청렴 정책 수립 및 청렴교육
- 청탁금지·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
- 공공기관 청렴도평가·부패영향평가

#### 신고처리·신고자보호

- 부패·공익신고 처리
- 신고자 보호·보상 제도 운영
-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

### 권익구제

#### 고충처리

- 고충민원 처리 및 집단민원 조정
- 민원처리 실태 확인·평가
-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

#### 행정심판

- 행정심판제도 총괄·조정
- 행정심판 사건 처리
-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

### 국민소통·제도개선

-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개선
- 디지털 국민신문고·국민생각함 운영
- 민원 빅데이터 분석·정책환류
- 정부합동 민원안내·상담 및 국민콜1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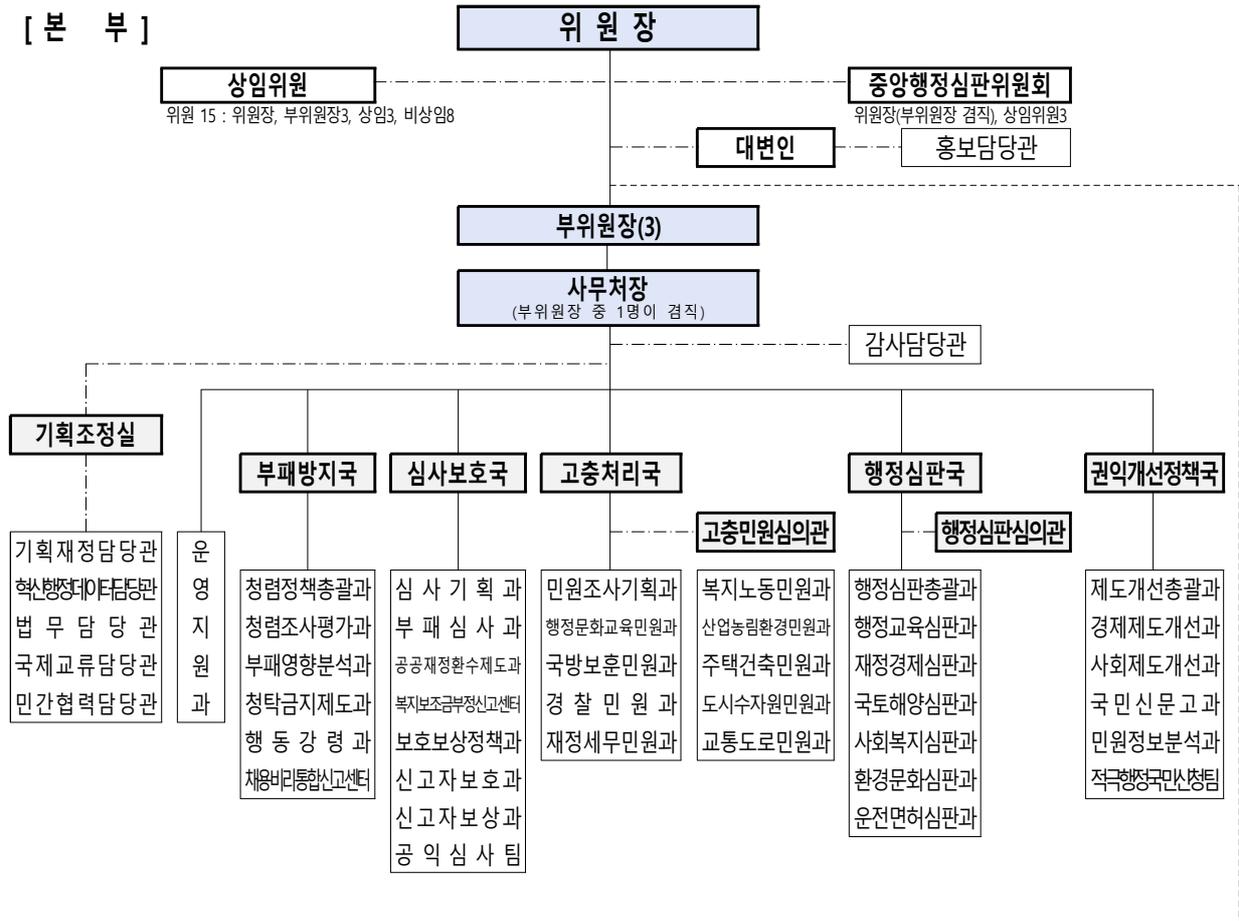
## 2 구성 및 조직

□ 위원회 : 15인(위원장, 부위원장 3, 상임위원 3, 비상임위원 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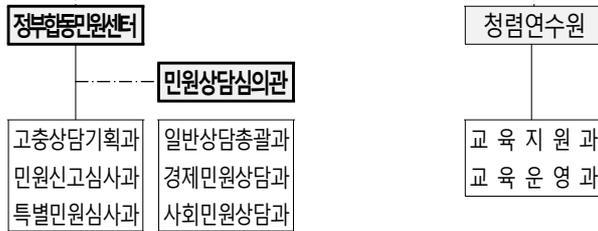
※ 중앙행심위는 위원장(부위원장 1명 겸임)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(상임위원 4인 이내)

□ 사무처 : 1실 5국 2관 1대변인 42과 3팀 2소속기관

[ 본 부 ]



[소속기관]



○ 정원 : 566명('23.1.5. 기준)

구분	계	정무직	고공단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이하	연구직	전문 경력관	특장직
계	566	4	17	14	36	42	206	235	1	8	3
본부	497	4	15	13	30	40	182	202	1	7	3
소속	79	-	2	1	6	2	24	43	-	1	-

### 3 예산

□ 총 950억원 : 인건비478억, 기본경비 74억, 주요사업비 397억

※ 주요사업비 : 39,693백만원

- 청렴권익문화확산 .....	2,025백만원
- 청렴권익행정정보화 .....	11,213백만원
-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.....	1,214백만원
- 부패·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.....	11,644백만원
- 국민고충해소 .....	1,331백만원
- 반부패청렴정책강화 .....	11,197백만원
- 행정심판 .....	1,069백만원

### 4 소관 법령

종류	법령명
법률 (6)	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	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	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
	공익신고자 보호법
	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
	행정심판법
대통령령 (9)	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	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
	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
	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
	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	행정심판법 시행령
	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
	공무원 행동강령
	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
총리령 (3)	행정심판법 시행규칙
	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	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
## II.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

### 1. 업무 추진 방향

비전

**국민 권익이 보호되는, 청렴한 대한민국**

목표

**실질적  
국민권익 보호**

**국민체감  
제도개선·규제혁신**

**세계 20위권  
청렴선진국 진입**

핵심  
추진  
과제

**1**

**현장중심의 민생구축·사회갈등 적극 해결**

**2**

**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·제도 개선**

**3**

**부패·불공정 관행 개선 및 사회전반의 청렴수준 제고**

**4**

**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**

**5**

**행정심판 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**

## 2. 주요업무 추진계획

### 1 현장중심의 민생고충·사회갈등 적극 해결

◆ 국민고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결하고, 빈발 민원은 「기획조사」를 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

#### □ 현장중심의 고충 해결 강화

- (현장형 옴부즈만) ‘달리는 국민신문고’를 통한 소외지역·취약계층 대상 고충해소 및 지역현안에 대한 현장해결 기능 강화(약 100회)  
※ 고충민원 상담·접수, 지역현안에 대한 기관의 의견청취 및 해소방안 등 논의
- (기업 애로 적극 해소)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·소상공인 및 취약 지역·업종 등을 대상으로 ‘기업고충 현장회의’\* 활성화(월 1회)  
\* 국가산단 경영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인·허가, 고용, 판로, 자금 등 맞춤형 고충해소 실시
- (집단고충민원 해결) 사회적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집단고충 민원(100인 이상)의 경우 적극적 현장조정 등으로 신속히 갈등 해소\*  
※ 신속·효율적 처리를 위해 ‘집단민원 조정해결 TF’ 설치(23.2월)  
\* 장기 미해결 사안에 대한 현장확인, 기관간 조율 강화 등으로 사회갈등 확산 방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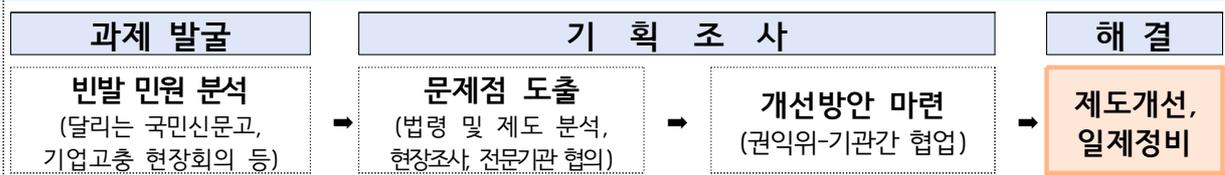
#### □ 빈발되는 민원은 「기획조사」로 국민고충 근원적 해결

- 빈발민원 또는 전국적 일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, 「고충민원 기획조사」를 통해 법·제도적 미흡 요인 개선 및 현장 문제를 구체적 해결  
- 주거, 환경, 안전, 교육 등 민생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 해결

##### 【고충민원 기획조사 추진과제(안)】

- ✓ (안전)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위 표시 정비
- ✓ (환경) 주민 축사악취를 고려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
- ✓ (생활불편)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
- ✓ (취약계층) 부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

##### 【고충민원 기획조사 추진체계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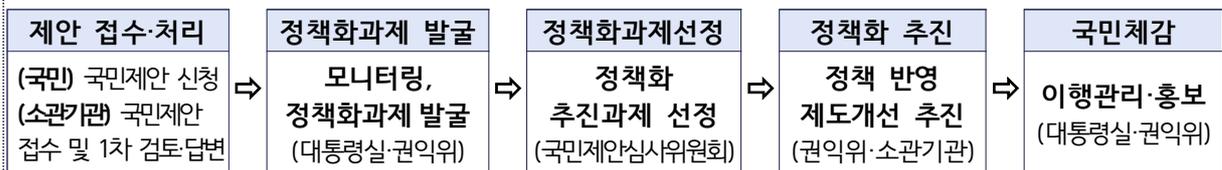
## 2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·제도 개선

◆ 민원·제안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 및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

### □ 생활공감형 국민제안 정책화를 통해 대국민 소통 강화

- (정책화 과제발굴) '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'에 접수되는 국민제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정책화 가능 과제\* 적극 발굴
  - \* 국민불편 및 일자리·주거 등 민생정책 개선 제안, 행정제도·운영 등의 개선 목적 제안
- (정책화 지원) 국민제안과 민원빅데이터의 연계·통합 분석 및 국민생각함 안전 상정을 통해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하고, 국민체감\* 제고
  - \* 우수제안 및 정책화 사례에 대한 분기별 대국민 발표 및 적극 이행 관리

#### 【국민제안 검토·처리 흐름도】



※ 민원·청원 처리절차 개선, 데이터 융합분석 도입 등 국민제안 시스템 고도화 추진(~23.7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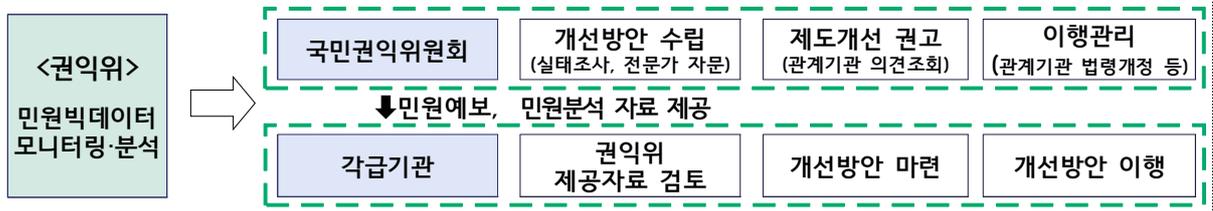
### □ 국민중심의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

- (국민참여 활성화)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을 확대(1,117개→1,162개)하고, 국민생각함 국민모니터단\*을 신규로 운영하여 우수안전 발굴·정책화 추진
  - \* 국민이 등록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우수안전 발굴 및 의제를 숙성·발전
- (민원업무 획기적 개선) '국민신문고 AI 자동답변 모델\*'을 개발하여, 반복·유사 민원에 대한 업무부담 해소 및 답변의 정확성·일관성 제고
  - \* 민원모니터링 및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민원답변 추천·생성

### □ 국민의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

- 국민신문고·새울(지자체) 등에 축적되는 1,300만건('22년)의 민원·제안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\*하여 국민 삶 개선에 활용
  - \* 현안별로 민원데이터를 추출하여 관련 통계,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→ 관계기관 제공

**【민원분석의 정책연계 흐름도】**



- ▶ (기획분석) 국정과제의 주요정책이 국민생활에 안착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사각지대를 민원분석을 통해 발굴·보완·발전 방안 제시
- ※ 주요 국정현안(3대 개혁(연금, 노동, 교육), 청년 등)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 실시

**【국정현안 관련 민원분석 주제(안)】**

\* 민원건수는 최근 2년간('21.1.~'22.12.)

- ✓ (연금) 국민연금 부담금액·급여,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(17,200여건)
- ✓ (노동) 구직급여 반복수급, 불명확한 경제제재, 산업재해 관련(24,000여건)
- ✓ (교육) 입학전형, 특례제도, 학생배정 등 고교진학 관련 학생·학부모 불편사항(56,200여건)
- ✓ (청년) 청년 주거, 청년 취업, 취업지원제도 관련 불편 및 불공정 사례(35,800여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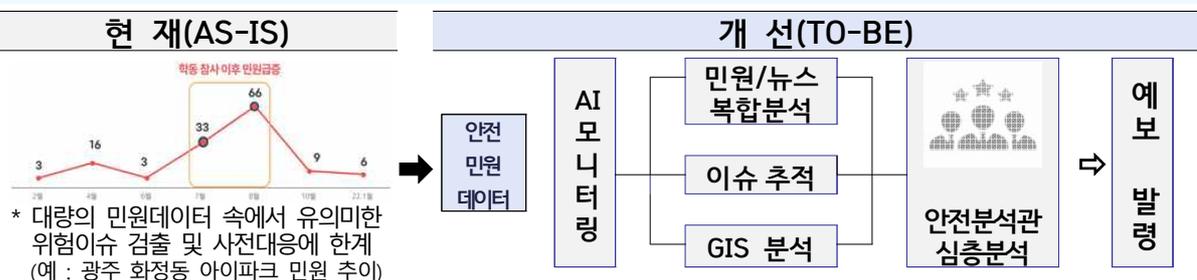
- ▶ (제도개선) 불합리한 법령·제도, 관행 등을 발굴,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, 부패와 고충을 근원적으로 예방

**【분야별 제도개선 추진과제(안)】**

부패방지 제도개선	공직사회 투명성 제고	· 공직자 관사운영을 투명하고 검소하게 개선 · 지자체 자체 감사체계 운영의 독립성·공정성 강화
	교육연구 분야 투명성제고	· 대학발전기금의 강제 모금과 자의적 집행 등 운영·관리 부실 · 대학연구개발비·교수창업·학교기업의 투명성 부족
고충해소 제도개선	불합리한 국민부담 해소	· 생계가 어려운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과도한 압류처분 · 착오 정도의 작은 실수에도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과태료 부과
	취약계층 보호 강화	· 장애인 학대 시설에 대한 제재 및 학대 피해자 보호 미흡 · 위탁아동 수술입원 등 긴급상황에 대한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 확대

- ▶ (민원예보) 민원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언론 등 관련 정보와 융·복합 분석으로 안전 위해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, 관계기관에 조치토록 예보 발령

**【민원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예보 시스템 체계도】**



\* 대량의 민원데이터 속에서 유의미한 위험이슈 검출 및 사전대응에 한계 (예 :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민원 추이)

※ 일시적 급증 또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 키워드(붕괴, 사고, 폭발 등)를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도출한 후 분석관이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조치요구(평균 2~3일 내)

### 3 부패·불공정 관행 개선 및 사회전반의 청렴수준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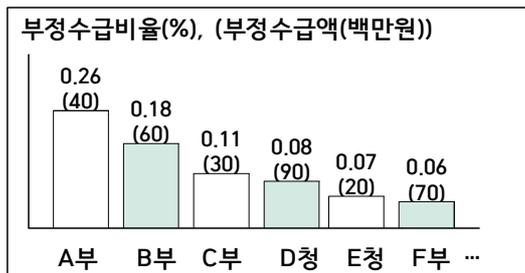
◆ 나랏돈의 부정사용 관행을 근절하고, 공공부문의 청렴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청렴도(CPI) 20위권의 청렴선진국 진입 기반 마련

#### □ 보조금 등 부정사용 근절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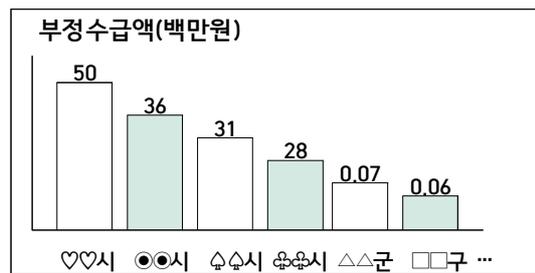
- 민간, 사회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, 관련 정보의 대국민 공개 확대
  - ▶ 권익위 '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센터'를 통한 상시 신고접수 및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(5~7월 예정) 운영으로 부정수급 강력 대응
  - ▶ 기관별·사업별 공공재정 현황, 부정수급 금액 및 비율, 환수액 등을 청렴포털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(연2회→상시입력)하고 대국민 공개

#### 【공공재정 부정수급·환수내역 정보 대국민 공개화면(예시)】

< 중앙행정기관별 부정수급비율 >



< 지자체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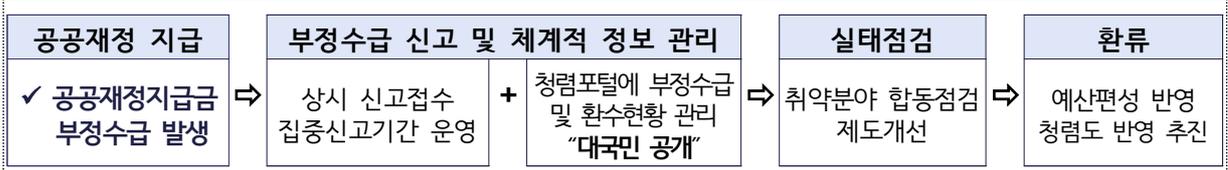


- ▶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, 신고가 집중되는 취약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, 관련 제도를 개선\*

\* (예시) △보조금 등 수급기관 내·외부 감사 시 필요적 감사 항목으로 반영, △고의 또는 상습 부정수급자에 대한 필요적 형사고발 기준 마련 등 권고

- ▶ 기관별 부정수급 관리현황을 공유(국무회의 등)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토록 하고, '기관별 자체 점검노력'을 청렴도평가에 반영 추진

#### 【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체계도】



## □ 청렴 정책의 내실있는 운영 및 청렴문화 확산

- (공공기관 청렴역량 강화)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 첫해('22) 결과 분석을 토대로 평가모형을 보완·정교화하고 평가대상기관 확대('22) 569개 → ('23)약 670개))

### 【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】

종합 청 렴 도	+	청렴체감도	외부·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·경험(이해관계자 설문조사)
	+	청렴노력도	반부패 추진체계 구축·운영 실적 및 효과성 평가(지표별 정량·정성평가 및 설문조사)
	-	(감점)부패실태	징계·감사·수사 등 적발된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(부패사건 통계)

※ 하위 기관의 맞춤형 청렴도 향상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청렴컨설팅 심층조사 기법 도입, 신규 공직유관단체 및 유권해석 질의 빈발기관 등 대상 정책·제도별 집중 컨설팅 제공

- (부패영향평가) 국정과제·민생 관련 법령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, 전 지자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해 단계적 전수 평가\* 추진('23~'24)  
\* '22년에 평가한 79개 지자체를 제외한 164개 지자체의 약 10만개 자치법규 순차 평가 실시
- (청렴윤리경영 확산) 공기업·민간기업에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(K-CP)\* 도입·운영을 지원하고, 전문 교육과정 확대(사이버코스웨어 개발)  
\* 공공기관용 가이드라인('22.6.30.배포) 개정·보완 및 민간기업용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

## □ 부패·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·지원 강화

- (신고자 보호체계 일원화)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등 반부패 5개 법률에 달리 규정된 신고자 보호·지원 규정을 통일\*하여 국민 혼란 예방  
\*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제도, 이행강제금, 위반자 제재수준 등 통일
- (신고자 지원 강화) 신고자 보상금 지급비율\*(4~30%)을 30%로 통일하고, 지급 상한액(30억)을 조정·폐지 추진  
\* 보상금 = 신고로 인한 수입회복 × 보상금 지급비율 × 감액사유 고려
- (신고자 보호 실효성 제고) 사전 검토회의 정례화 등 절차를 개선하여 신고자 보호사건을 신속히 처리\*하고, 보호규정 위반을 징계기준에 명시해 보호조치 실효성 제고  
\* '22년 보호사건 234건 처리, 106.7일 소요(신분보장 보호사건 132건, 124.1일 소요)

#### 4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

◆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기반을 구축하고, 청년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도약의 기회 보장

##### □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

- (전담기구 설치) 공정채용 전담기구인 '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'를 신설('23.1월)해 체계적·종합적인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

###### 【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주요 기능】

-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✓ 공공부문 '공정채용 기준' 마련 | ✓ 기관별 인사규정 컨설팅    |
| ✓ 공정채용 실태조사 관리대상 확대 | ✓ 공정채용 전문 교육과정 운영 |
| ✓ 채용비리 상시 신고 접수·처리  | ✓ 채용비리 신고자 보호·포상  |

- (관리 사각지대 해소) 중앙·지방 행정기관의 공무원, 계약직 등 비공무원('20.12. 기준 약 43만명) '공정채용 기준' 마련 및 실태조사 실시  
※ ('23년) '공정채용 기준'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기관별 인사규정 반영 여부 점검  
→ ('24년~) '공정채용 기준' 준수 여부 주기적 점검 추진
- (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 일괄 정비) 기관별 자체 채용규정의 적정성을 전수 점검하고, 컨설팅과 개정 권고 등을 통해 불공정 채용 사전예방  
※ 3년('23~'25년)간 약 1,300여개 공직유관단체 규정의 '공정채용 법령·지침' 위반 및 누락 여부를 진단·점검하고, 개정 유도
- (정기조사 실시) 전공직유관단체의 '22년 채용과정 적정성 여부를 점검, 채용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,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 추진  
※ 채용특혜 등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현안 발생 시 신속한 현장점검 및 즉시 조치 실시

##### □ 국가자격시험 제도·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

- 청년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세무사·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(15종)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 제도를 개선

\* 공직자에게 '전문자격 자동부여' 또는 '시험과목 일부 면제' 등 혜택

## 5 행정심판 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

◆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 및 온라인 접수처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,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

### □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

- (기관 통합) 개별법에 따라 각기 운영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(66개)과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국민 편의 제고
  - ※ 특별행정심판기관 대부분이 처분기관의 상급 중앙부처에 설치되어 심리 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점 개선

#### 【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단계】

특별행정심판기관(66개)  
단계적 통합대상 선별\*

+

학계 토론회,  
국회 공청회 실시

+

정책협의체\*\*  
구성 검토

→

행정심판법 개정안  
마련·국회제출('23.12월)

\* 특별행정심판 기관(66개)별 의사결정구조, 사건처리·인력운용 현황, 통합 장단점 등 분석  
\*\* 관계기관, 정계, 학계,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검토, 합리적 개편안 마련

- (시스템 통합)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접수·처리·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'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' 통합('25년 전기관 통합목표)
  - ※ 통합에 따른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BPR/ISP 수립(~'23.7월)

### □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폭 확대

- (권익구제 역할 강화) 처분청의 소극행정, 불합리한 행위 등 구체적 부당성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당성 판단을 확대하고, 변경재결\*을 활성화
  - \* (예시)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시 영업정지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국민이 받는 불이익이 큰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
- (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) 심판청구 전부터 선제적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서 작성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\* 추진
  - ※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404건 신청 및 149건 선임('22년)
  - \* 국선대리인 신청자격 변경(행정심판법 개정) : (현행) 청구인 → (개선)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
- (EASY 행정심판) 국민들이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'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'의 제공기관을 확대\*하여, 심판청구의 편의성을 제고
  - \* ('22년) 중앙행정심판위 → ('23년) 시·도, 시·도교육청, 검찰청 등 53개 행심위로 확대